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1. 11. .
발 의 자 : 강은미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가 주목 받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에, 미국 연방 거래위원회(FTC)는 지난 7월에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시행하였음.

해당 법은 일정 기간 부품 단종을 금지하고, 사설 수리센터를 통한 수리를 허가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자원절약을 통해 ‘탄소 중립’ 정책에도 기여하자는 취지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수리할 권리에 대한 관심과 정책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 제정을 통하여 수리할 권리에 대한 관심 제고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수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제품의

사용가능 기간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원 낭비 감소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수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를 지님(안 제4조).

다. 환경부장관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수리권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수리권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수리권 정책위원회는 수리권 심사 예비 품목 중 수리권 심사 절차를 거쳐 수리권 대상 품목을 확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제조 사업자는 수리권 대상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하고 배포하여야 하며, 수리부품 책임 사업자는 부품의 재고를 확보·유지하여 원활하게 공급하여야 하며, 수리 사업자는 수리를 대행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수리 비용 및 부품 비용은 제품 및 부품의 출고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20조).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에게 본인이 사용 중인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제품의 사용가능 기간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이란 부품을 가공·조합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 일련의 제조공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재화로서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수리”란 제품의 손상 또는 기능 이상이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품이 있을 경우 물리적, 소프트웨어적 방법을 거쳐 본래의 기능과 같거나 가까운 수준으로 복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수리권”이란 소비자가 스스로 또는 수리 사업자의 수리 대행 등을 통하여 보유 중인 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4. “수리권 대상 품목”이란 정부의 심사 절차를 거쳐 수리권의 보장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의 품목을 말한다.
5. “수리권 대상 제품”이란 수리권 대상 품목에 속하는 제품들을 말한다.
6. “부품”이란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을 말한다.
7. “수리 부품”이란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품을 말한다.
8. “연결 부품”이란 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조립과정에서 쓰이는 부품과 부품 간 연결용 물품을 말한다.
9. “수리 장비”란 수리를 위하여 부품 간 조립 및 해체, 부품의 기능 회복, 기능 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공구 등을 말한다.
10. “제조 사업자”란 수리권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해외의 제조 사업자가 국내에 주소, 영업소, 대리인 등을 둔 경우에는 해당 주소 등을 국내에서의 제조 사업자로 본다.
11. “유통 사업자”란 수리권 대상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2. “수리부품 책임 사업자”란 수리 부품, 연결 부품의 생산 등을 통한 물량 확보와 적정량의 재고 비축을 책임지는 사업자를 말한다.
13. “유통 사업자 수리지원 협력기구”란 소비자에 대한 수리권 지원과 공동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유통 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14. “제품 수리 설명서”란 수리에 필요한 필수적 정보인 수리절차, 필요 물품 목록, 필요 물품의 입수 방법 등 일체가 정리된 문서를 말한다.

15. “수리 사업자”란 제조 사업자나 유통 사업자의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곳에서 수리 대행, 수리부품 유통 등을 통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중소기업 혹은 자영업자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권리) ① 소비자는 수리권 대상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동시에 본인 소유 제품에 대한 수리 권한을 갖는다.

② 소비자는 원할 경우 언제든지 수리권 대상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③ 소비자는 스스로 또는 수리 사업자를 통하여 수리를 했다는 이유로 제조 사업자나 유통 사업자로부터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④ 소비자는 수리권 대상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조 사업자 및 유통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소비자는 수리권 보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할 수 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수리권 대상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수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수리권 대상 품목과 제품의 정보 관련 목록을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조 사업자 및 유통 사업자 등이 수리권 보장을 위하여 역할을 다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은 수리권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 사업자를 지원하고 수리 기술의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조 사업자 및 유통 사업자의 의무) ① 제조 사업자 및 유통 사업자는 소비자가 수리권 대상 제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수리할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 ② 제조 사업자 및 유통 사업자는 소비자가 수리권 대상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를 얻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조 사업자 및 유통 사업자는 제품 수리 설명서를 정해진 원칙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편의에 맞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조 사업자 및 유통 사업자는 수리권 대상 제품의 수리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필요한 수리 부품과 연결 부품, 수리 장비 등을 손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⑤ 제조 사업자 및 유통 사업자는 사후 서비스 과정에서 스스로 또는 수리 사업자가 제품을 수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

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조 사업자 및 유통 사업자 중 수리부품 책임 사업자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수리권 대상 제품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직접 수리를 하여야 한다.

⑦ 제조 사업자 및 유통 사업자는 수리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주기적으로 신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수리권 보장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수리권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리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리권과 관련된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2. 수리권 정책의 기본방향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수리권 정책의 목표
 - 가. 수리권 보장 수준의 강화
 - 나. 수리권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 다. 수리 산업 육성과 사업자 간 협력 증진
 - 라. 수리권 보장을 통한 생태환경 보호와 온실가스 저감

4. 수리권 보장에 대한 이행점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수리권 관련 분쟁에 대하여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수리권 관련 국제문제에 대한 대응
7. 그 밖에 수리권 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7조(수리권 정책위원회) ① 수리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리권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리권 관련 각종 정부 정책
2. 수리권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수리권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각종 원칙 및 가이드라인
4. 수리권 대상 품목의 선정
5. 수리권 적용에 대한 각종 예외사항의 결정
6. 수리권 관련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수리할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환경부장관을 부위원장 겸 간사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하며 최소 20명 이상으로 한다.

1. 사업자 단체 대표자
2. 소비자 단체 대표자

3. 노동자 단체 대표자
4. 안전 및 환경 분야 전문가
5. 법률 전문가
6. 기타 국무총리가 자격을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수리권 심사 예비 품목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은 수리권 적용 여부 심사(이하 “수리권 심사”라 한다)를 위한 예비 품목이 된다.

1. 전년도 국내 전체 판매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품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품목
 - 가. 전기, 전자, 통신 등의 기능을 갖춘 제품
 - 나. 사람이나 화물의 이동 수단
 - 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생활용품
 - 라.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설비
 - 마. 농업·축산업·수산업 등에 쓰이는 기계 및 장비
 - 바. 그 밖에 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지정한 제품
 3. 소비자가 구입하는 최종 가격이 30만원 이상인 제품의 품목
 4. 소비자의 사용 빈도와 제품의 내구연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제품의 품목
- ② 정책위원회는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권 심사 예비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비자가 수리권 심사를 요청하는 품목
2.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리권 심사를 요청하는 품목
3. 그 밖에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제9조(수리권 심사 절차) ① 수리권 심사 예비 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수리권 심사 절차를 거친 것은 수리권 대상 품목으로 확정된다.

1. 각 중앙행정기관이 현재 관리·감독 중인 품목에 대하여 세부기능과 부품별로 수리권 적용이 타당한지 기본 심사
2. 제1호의 심사 결과에 대한 정책위원회가 최종 심사

② 제1항 각 호의 심사를 주관하는 기관은 기술 표준, 안전, 지적재산권, 소비자 보호, 정보보안 등과 관련하여 해당 사무를 주관하는 관련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24조의 소비자 의견수렴 방법에 따라 수집된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③ 수리권 심사 절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정책위원회는 매년 1회 수리권 심사를 거쳐 수리권 대상 품목과 그 세부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정책위원회는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수리권 심사 절차,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수리권 심사의 예외)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 심사를 할 때 해당 중앙행정기관은 수리권 대상 품목 중 기능이나 부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능이나 부품을 수리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및 국방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고도의 기술이나 고가 장비가 필요하여 개인 차원에서 수리가 극히 어려운 경우
3. 수리하는 사람의 안전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극복 가능한 대응방법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리권 적용 제외 결정에 대하여 사안의 중대성, 긴급성이 부족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리권 적용 예외 및 반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품의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원칙) ① 제조 사업자는 수리권 대상 제품에 대하여 제품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개인의 능력으로 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2. 수리 부품, 연결 부품, 수리 장비 등에 소비자의 쉬운 접근과 활용을 고려할 것
3. 제품 구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수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잠금을 해제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4. 그 밖에 정책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 ② 유통 사업자는 필요할 경우 제품 설계와 관련하여 제조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 ③ 정책위원회는 제1항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리 가능성 등급제) ① 수리권 대상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리권 적용의 가능성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1. 수리권 관련 정보 제공의 수준
2. 수리 가능한 기능과 부품의 비율
3. 수리의 난이도
4. 부품 공급의 원활성
5. 제품 특성에 따른 세부 특이사항
6. 그 밖의 정책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

- ② 수리권에 관한 등급은 5단계 이상으로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등급분류에 관한 사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등급 단계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등급분류를 받은 사업자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할 때 등급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건강 및 안전 보장) ① 제조 사업자 및 유통 사업자는 수리 과정에서 누구든지 안전이나 건강이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대책을 수리권 대상 제품의 판매에 앞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정책위원회는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제품안전정책협의회와 협의하여 수리권과 관련한 안전과 건강에 관한 세부원칙을 보급할 수 있다.
- ③ 수리하는 사람의 건강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은 이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제품안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품 수리 설명서) ① 제조 사업자는 수리권 대상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리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리 및 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고지
2. 수리하는 사람의 신체피해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안내사항
3. 제품의 상세 구조
4. 부품 및 기능별 수리 절차와 방법
5. 수리 부품, 연결 부품 등의 내구연한 및 입수방법
6. 수리 장비의 입수 및 조작 방법
7. 고충 발생 시 해결 방법 및 사업자의 지원 방안
8. 그 밖에 정책위원회가 제품 수리 설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국내에 주소, 영업소, 대리인 등이 없는 해외 제조 사업자의 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의 설명서 내용이 제1항의 내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조 사업자와 협의하여 보충 설명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유통 사업자는 수리권 대상 제품을 판매할 때 제품 수리 설명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1. 제품에 동봉된 책자
2. 인터넷 문서
3. 동영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 제조 사업자 또는 유통 사업자는 제1항의 설명서 중 명백한 오

류를 발견한 경우 제조 사업자의 주관 하에 상호 협력하여 설명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오류 사항이 심각하고 중대한 경우 유통 사업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련 정보를 즉각 소비자에게 알린 후 제품 수리 설명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⑤ 제조 사업자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하여 수리권 대상 제품의 설명서의 오류 여부를 6개월에 1회 이상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제품 수리 설명서 내용을 갱신하여야 한다.

⑥ 유통 사업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수정·갱신된 제품 수리 설명서를 지체 없이 다시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책자형으로 인쇄된 설명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에서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제품 수리 설명서의 작성, 수정,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수리 부품의 요건과 필수 제공 원칙) ① 수리 부품 및 연결 부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
2. 통상적인 공구나 장비로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제조 당시 사용된 부품과 유사한 성능 및 내구성이 보장될 것
4. 그 밖에 정책위원회에서 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② 수리권 대상 품목에 대하여 수리 부품과 연결 부품은 일정 기간 이상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하 “필수제공기간”이라

한다)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다만, 해당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첫 제조일부터 단종 후 5년까지로 한다.

③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부품의 필수 제공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품의 요건, 제공기간 및 제공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리부품 책임 사업자) ① 수리부품 책임 사업자는 제조 사업자가 맡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거쳐 유통 사업자에게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1. 제조 사업자에게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인력, 설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제품에 대하여 유통 사업자가 관련 업무를 맡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 대리인 등을 두지 아니한 해외 제조 사업자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4. 관련 업무에 대한 역량을 갖춘 유통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위임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수리부품 책임 사업자는 제품 판매량·부품별 수명·소비자의 수리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조 또는 구매 등의 방법으로 수리 부품과 연결 부품의 재고를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 및 유지하고 유통 사업자, 수리 사업자, 소비자 등에게 원활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④ 수리부품 책임 사업자는 제3항의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거쳐 일정 기간 예외 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조 사업자가 수리부품 책임 사업자인 경우: 부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수급이나 생산 공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통 사업자가 수리부품 책임 사업자인 경우: 제3의 사업자들을 통하여도 부품의 구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조치의 허용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수리부품 책임 사업자는 이 조에 규정된 부품 지원 업무 일체와 관련하여 수리권 대상 제품의 제조, 유통 등과 관련된 다른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유통 사업자 수리지원 협력기구 구성) ① 수리권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유통 사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유통 사업자 간 수리 지원 협력기구(이하 “협력기구”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조치할 수 있으며, 이 법률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협력기구는 제19조에 따른 수리 사업자와 협력하여 관련 수리 관련 정보 공유, 거래 중개 등을 할 수 있다.

③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협력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협력기구의 구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는 협력기구 내 사업자 간 공정한 역할 배분을 위한 원칙을 마련할 수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원칙에 따라 협력기구의 활동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력기구의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수리 의뢰) ① 소비자는 수리부품 책임 사업자나 수리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리 의뢰를 받은 사업자는 수리 기간, 수리할 내용, 비용 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수리를 진행하는 도중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받고 수리를 재개하

여야 한다.

③ 수리 의뢰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1. 특별한 이유 없이 수리를 회피, 거부하는 행위
2. 수리 기일을 합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행위
3. 수리와 관련된 정보 고지를 회피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4. 의뢰자가 인지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내역의 수리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들과 관련하여 허위사실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6. 그 밖에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④ 수리부품 책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수리 의뢰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제15조에 따른 수리부품 필수 제공기간과 같다.

⑤ 수리 의뢰를 받은 사업자는 제품에 포함된 개인정보나 데이터가 침해·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책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세부 지침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보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른 수리 기간의 상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수리 사업자) ① 수리 사업자는 수리부품 및 수리장비 판매,

수리 대행 등을 할 수 있다.

② 수리 사업자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수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제조 및 유통사업자와 협력할 수 있다.

1. 기술 숙련도 향상

2. 안전 교육

3. 소비자 보호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수리 기술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리 사업자를 우수 수리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우수 수리 사업자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점검을 통하여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인증 절차, 정기점검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리 비용 및 부품 비용 상한제)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리 의뢰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리 비용이 출고가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조 및 유통사업자는 수리 부품과 연결 부품의 가격이 각 부품

별 출고가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여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상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온실가스 감축 인정 등 선도기업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매년 기업별로 수리권 보장 이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리권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우수한 등급의 제품들을 모범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실적을 검토하여 우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우수 사업자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 점검을 통하여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리권 우수 사업자로 인증된 사업자
2. 수리권 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
3. 수리 기술의 혁신에 공헌이 큰 수리 사업자

4. 수리권의 보장과 확산을 위한 사회적 활동을 인정받은 사람
 5. 그 밖에 국가나 지자체가 그 공적을 인정하는 사람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절차, 정기점검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제22조(범부처 협력 증진)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습득한 정보나 신고사항을 환경부장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책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이 보유 중인 수리권 관련 자료 및 통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그 밖에 부처간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수리권 통합 정보망 구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수리할 권리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통합 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수리권 대상 품목과 제품의 정보
2. 수리권에 대하여 각종 예외나 감면조치를 받은 품목과 제품의 정보
3. 제품별 설명서

4. 수리 부품, 연결 부품, 수리 장비에 대한 정보
5. 수리 방법, 장비 조작, 안전 조치 등에 대한 교육자료
6. 수리 사업자 관련 정보
7. 수리권 보장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수렴 등
8. 수리권 보장에 관심있는 소비자 간 정보 공유 및 교류 증진
9. 수리권 보장으로 인한 각종 정책효과 및 실적에 관한 홍보사항
1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소비자 의견수렴) ① 환경부장관은 수리권 대상 제품의 선정, 변경, 추가, 조정 등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리권 관련 소비자 의견수렴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 창구를 설치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각종 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내용을 각종 의사결정이나 정책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실시 방법, 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항

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조사연구 및 대국민 인식 제고) ① 환경부장관은 수리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수리권 제도 시행 관련 실태조사
2. 수리권 제도 개선방안 연구
3. 자원 낭비 절감, 온실가스 배출 감축, 폐기물 배출 감소에 대한 실적 조사
4. 해외 동향 및 사례의 연구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수리할 권리에 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원하거나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26조(국제협력) 환경부장관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 외국의 관련 단체 등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리권에 관한 정보 교류
2. 수리권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수리권 관련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7조(분쟁의 조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 분쟁조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수리권 이행상황 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인원수 이상의 소비자가 특정 수리권 대상 제품에 대하여 수리권 보장이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조사요청 건수가 과도하여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2. 동일한 소비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조사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3. 특정한 사업자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조사를 신청하는 등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 요청에 응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12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요청한 소

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의무 이행 관련 권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수리권 대상 제품에서 수리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나 정보가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정보 보완, 설계 변경, 제조 및 유통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고,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금지행위)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리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리 가능성 등급분류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제15조제2항에 따른 필수제공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행위
4. 제28조2항에 따른 수리권 이행상황 조사에 대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변조, 파기하는 행위
5. 제29조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31조(내부자 신고 등) ① 제조 및 유통사업자가 수리권 보장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관련 정보를 은폐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와 근로, 도급, 위임, 위탁계약 등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조 사업자 및 유통 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리 및 부품 비용을 수령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한 자
6. 제31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서를 배포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수정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리권 보장의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